

중계기 보상 현안회의 자료

(업무조정관련 의견)

■ 사장방침

- 사장방침 제 963호는 보상물건의 종류(토지, 건물, 공작물등)가 아닌 보상의 인적대상(현금청산자, 영업자)을 기준으로 업무 조정

■ 영업자

- 법률자문의견서상 중계기 설치자는 현금청산자로 볼수 없으며,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일부에 중계기를 설치한 영업자에 해당

- 에스케이(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(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8호)로 동법 제80조에 따라 설비의 이전을 요구받는 경우 필요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, 토지보상법 제 77조(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) 제 1항상 시설의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대상인 영업자에 해당함

■ 중계기 보상 사례(첨부 평가서 참조)

사업지구	사업자	보상가액(원)	보상유형
고덕강일	에스케이	175,000,000	이전비
	엘지	9,000,000	이전비

영업자에 대한 감정평가시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이익과 시설이전비용 합하여 평가(토지보상법 제 77조 제 1항)
*누락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로 영업자(심소정-영업휴업손실, 정승준-영업자이나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어서 지장물이전보상, 에스케이등(중계기)-지장물이전보상에 대한 감정평가)

■ 보상 실무

영업자의 영업손실보상 및 영업손실대상자 아닌 영업자들에 대한 지장물이전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(첨부 '고덕강일지구 영업보상 관련 감정평가 의뢰 계획' 참조)

116371650864622

■ 원가계정항목 *우리공사 원가계정항목상 영업권보상에서도 지장물보상비 지출이 포함

원가계정항목
지장물등보상비.보상액(제결포함)
지장물등보상비.보상액
지장물등보상비.이의제결중액
지장물등보상비.영업권보상
지장물등보상비.영농보상
지장물등보상비.분묘개정비

■ 효율성측면

영업자에 대한 시설물 이전 보상에 대해 현장접근성이 좋은 세운사업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며,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용파악이 훨씬 수월한 기존 접촉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